

시 방 서

적용 제품 : 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

[해당 시방서는 시공 방법의 개선을 통해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정 이력

개정날짜	개정사유	개정번호
2016.01.01	전면개정	시방서_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_1
2016.04.28	보강대 추가	시방서_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_2
2017.10.16	도면수정 및 옵션 추가	시방서_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_3
2025.04.10	시공방식 수정	시방서_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_4
2026.04.03	정도산업 구분	시방서_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_5

정 도 산 업(주)

무단횡단금지휨스 설치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목적

이 시방서는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으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 자동차와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의 시공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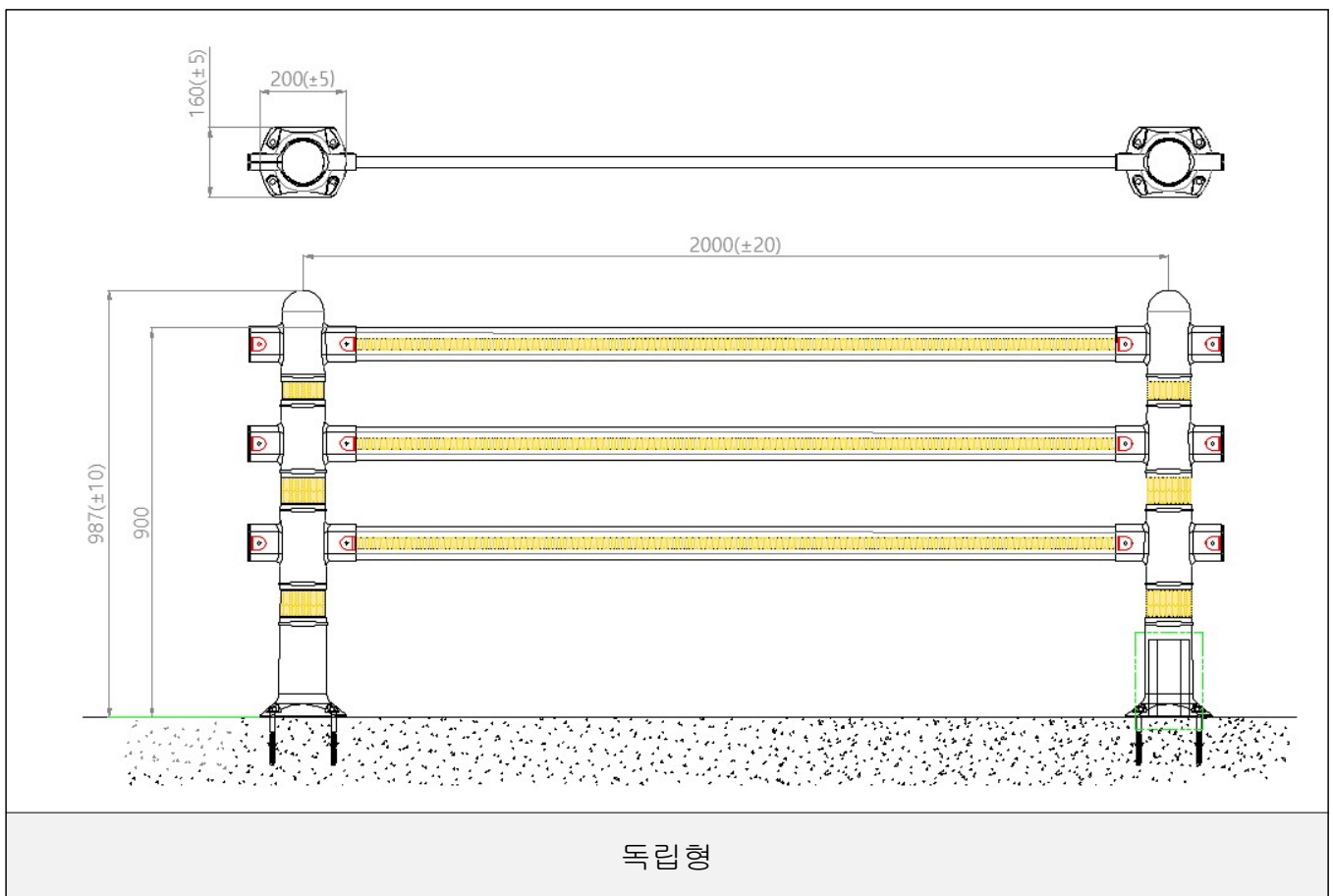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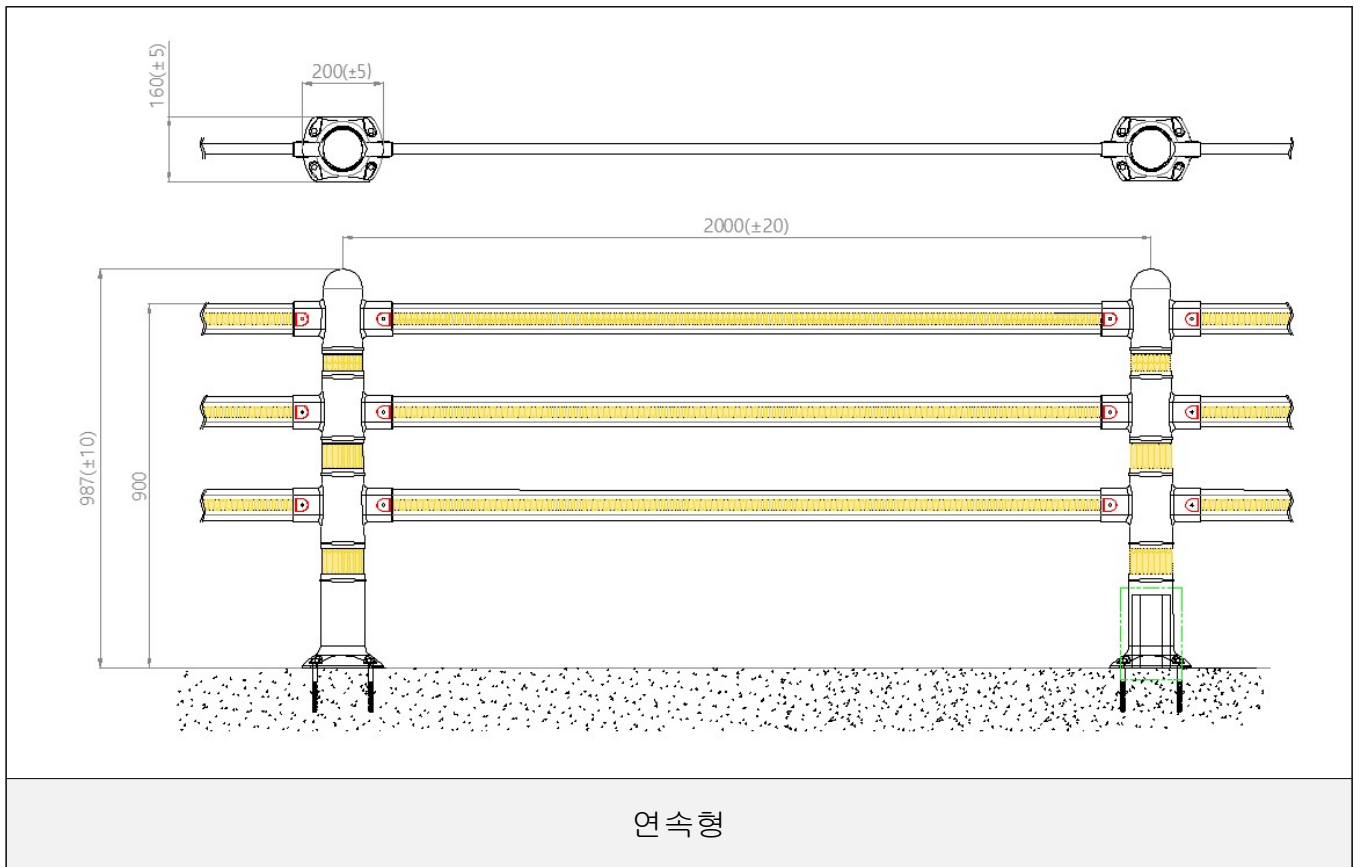
가. 명칭 : 무단횡단금지휨스(가로형-일반용)

나. 규격 : L2000mm×W160mm×(휨대 H900mm) (지주 H987mm)

다. 재질 : 지주(TPU_우레탄) / 휨대(PC)

3. 제품 구조도





4. 설치관리

4.1 일반 사항

- 가.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 시 문제가 발생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 나.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 다. 현장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4.2 안전조치

- 가.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한다.
- 나.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4.3 시공 방법

- 가.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한다.
- 나. 시공할 위치에 무단횡단금지휨스를 위치시키고 바닥 홀과 맞게 지면에 표시한다.
- 다. 표시된 지면에 Ø17 드릴로 120mm 천공한다.

- 라. 천공된 지면에 플라스틱 썬기 앵커(Ø 16x100)를 삽입한다.
- 마. 무단횡단금지휨스를 놓은 후 천공 구멍과 일치시킨다.
- 바. 스크류 볼트(Ø 12x150)를 구멍에 삽입한다.
- 사. 임팩트 렌치에 17mm 소켓을 체결 후 스크류 볼트를 조인다.
- 아. 무단횡단금지휨스 지주에 보강대와 Bar를 끼워 넣는다.
- 자. 지주와 Bar의 홀에 볼트(M6)-평와셔-너트(M6) 순서로 체결한다.
- 차. 상위 방법으로 독립 또는 연속 설치하여 시공을 마무리한다.
- 카. 단부지주 및 판넬은 옵션사항이므로 선택하여 체결한다.
- 타.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5.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6. 유지관리

본 무단횡단금지휨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서에 없을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6.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6.2 보수

- 가. 사고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7. 기타

7.1 기록

파손 또는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하고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 1) 점검 보수 시의 기록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다.
- 2) 시공상 특이점 등을 기록한다.

7.2 설치 관련 협조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